

가을 단풍철 맛이 ‘추억의 가을길’

다채로운 가을 풍경 구경으로 자연스러운 걷기 활동 참여

◆2024년 추억의 가을길 운영 대상지

테마	위치	구간	비고
계		23개소	
드라이브길	팔공로	공산담-백안삼거리-도학교	
	팔공산 순환도로	팔공CC삼거리-파계사삼거리	
가족 산행길	앞산 큰골 등산로	충훈탑~만수정~은적사	
	앞산 고산골 등산로	고산골 등산로 입구-관리사무소	
	앞산 자락길	고산골 ~ 안지랑골 ~ 달비골	
일상생활 속 가을길	침산로22길	코오롱하늘채단지-침산한민스카이	
	침산로	침산쌍용에이파트-무림제지	
	학정로	구암네거리~부영그린타운아파트	
	대학로	경대서문교차로 ~ 복현오거리	
도심 속 가을길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중~조형분수	
	두류공원	두류도서관-산미루휴게소	
		문화예술회관-시계탑	
달성공원	토성 산책로		
나들이길	수목원 순환숲길	제3문-제3주차장	국화 전시회 (10.29.~11.10.)
	수목원 흙길 산책로	제1주차장-양치식물원	
	수목원 느티마중길	입구초소-유실수원	
	서구 그린웨이	대구의료원-이현공원-서평초 건너	
	대명남로	남명삼거리-대덕성당	
	미술관로	대덕마을 삼거리-월드컵로	
	유니버시아드로	범안삼거리-경산시 경계	
	용화로	호텔수성-삼풍아파트	
	옥포로	옥연지 둘레길	

일상 속 지친 심신을 달래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의 가을길에서 오감으로 단풍과 가을 정취를 한껏 느껴보자.

올해 대구에서는 팔공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11월까지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 자료에 따르면 팔공산에서 첫 단풍은 10월 18일(금)에 시작해 10월 29일(화)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갈 수 있고 단풍이 아름다운 곳을 ‘추억의 가을길’로 선정해 일부 구간은 낙엽을 쓸지 않고 두어 낙엽과 함께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

대구에서 가을철 낙엽이 아름다운 대표적인 곳으로는 팔공산 일원이 있다. 팔공로(공산담~도학교)와 팔공산 순환도로(팔공CC삼거리~파계사



수목원 순환숲길(수목원관리소)

삼거리)는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만드는 노랑과 붉은색 물결을 드라이브하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앞산 권역은 큰골 등산로(충훈탑~은적사)와 앞산 자락길(고산골-안지랑골~달비골)이 있으며 참나무의 단풍을 느끼고, 도토리를 수확하는 다람쥐도 구경하며, 산행을 즐길 수 있다.

대구수목원에서도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는데, 제1주차장에서 전통정원까지 이어진 흙길 산책로와 제3문에서 제3주차장의 순환 숲길이 있다. 각양각색의 수목과 초화류가 둘러싸인 길을 걸으며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10월 29일(화)~11월 10일(일)까지

는 국화 전시회도 즐길 수 있는 가을 명소라고 할 수 있다.

도심 속에서 쉽게 접근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두류공원 및 달성공원, 서구 그린웨이가 있다.

특히 서구 그린웨이는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도시숲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곳으로 장미원, 백합원, 야생화원 등 다양한 테마정원이 조성되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홍만표 대구광역시 산림복지과장은 “올가을, 추억의 가을길을 방문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시청>

기고

반부패·청렴을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

최근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면 기금이 조성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재혁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이렇듯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노후준비를 위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야 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우리 공단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도 ‘청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150조 원을 돌파하였고,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대구·경북지역에서만 80만 명을 넘어섰다. 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수급자가 많아지는 만큼 공단은 매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민원인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공단은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범 강화와 기금운용 업무의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여 부패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해충돌 상황별 자가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내부통제 강화 및 선제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각 지사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 실천반’을 운영하고, 국민제안, 고객의 소리 등 여러 채널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공단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우수기관 중 선정하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시범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과 고객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 Q&A

Q.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미납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체납된 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월의 1/2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거나,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는 내게 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